제337회 임시회
2015. 2. 5.(목)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2. 5.(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광옥 의원 등 7명

나. 발의일자 : 2015년 1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월 27일

-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옥 의원)**

**1.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호 다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제2조 제3호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 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를 개정

## 3. 검토보고 요지

###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보통신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이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시에 개정을 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광옥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24 |
|---|---|

발의연월일 : 2015년 1월 19일
발 의 자 : 최광옥,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박종규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호 다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제2조 제3호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 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를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부서 협의 :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10. 16 ~ 2014. 11. 20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수수료 (제8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br>- 1일 1시간 이내: 무료<br>-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br>- A3 이상 300원<br>·1장 초과마다 100원<br>- B4 이하 250원<br>·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br>-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br>·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br>-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br>·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br>-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br>·1개마다 5,000원<br>-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br>·1건마다 3,000원 |

| | | |
|---|---|---|
|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br>-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br>·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br>-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br>·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br><br>○ **영화필름의 시청**<br>-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br>·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br>-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br>·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br><br>○ **사진필름의 열람**<br>- 1장: 200원<br>· 1장 초과마다 50원 | ※ 매체비용은 별도<br>○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br>-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br>· 1롤마다 5,000원<br>-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br>· 1편마다 3,000원<br>※ 매체비용은 별도<br>○ **사진필름의 복제**<br>- 1컷마다 6,000원<br>※ 매체비용은 별도<br><br>○ **사진필름의 인화**<br>- 1컷마다 500원<br>· 1장 초과마다<br>3″×5″ 200원<br>5″×7″ 300원<br>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br>·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br>- 1건(10컷 기준)1회: 500원<br>·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br><br>○ **슬라이드의 시청**<br>-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br>- A3 이상 300원<br>· 1장 초과마다 200원<br>- B4 이하 250원<br>· 1장 초과마다 150원<br><br>○ **마이크로필름의 복제**<br>- 1롤마다 1,000원<br>※ 매체비용은 별도<br><br>○ **슬라이드의 복제**<br>- 1컷마다 3,000원<br>※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br>- 1일 1시간 이내 : 무료<br>-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br><br>○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 ○ **사본(종이출력물)**<br>- A3 이상 300원<br>· 1장 초과마다 100원<br>- B4 이하 250원<br>· 1장 초과마다 50원<br><br>○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 | |
|---|---|---|
| | **의 시청·청취**<br>- 1편: 1,500원<br>·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br>-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br>(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br>-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br>-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br>※ 매체비용은 별도<br><br>○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br>-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br>-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br>※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생략)<br>1~2. (생략)<br>3. (생략)<br>가.~나. (생략)<br>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r>1~2.<br>3.<br>가.~나.<br>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관련법령 발췌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